

## 【 문항개발 및 평가 소위원회 시행세칙 】

[신설 2019년 11월 28일]

[개정 2021년 8월 31일]

- ① **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규정 11장에 명시된 교육과정 소위원회로 설치된 문항개발 및 평가 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위원회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문항개발 및 평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**(적용범위)**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타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에 따른다.
- ③ **(설치와 구성)**
  1.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.
  2. 당연직은 의학과장과 교수학습지원실장과 해당영역 교육중점교수로 하며 그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한다.
  3. 선출직 위원은 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[개정 2021년 8월 31일]
- ④ **(위원장)** 위원장은 학장이 임명한다.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⑤ **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1. 기초 및 임상의학종합평가를 위한 연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2. 기초 및 임상의학종합평가 연간 출제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3. 기초 및 임상의학종합평가 문항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
  4. 문항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5. 기초 및 임상의학종합평가 문제은행관리에 관한 사항
  6. 기타 문항개발 및 평가 업무에 관하여 학장이 요청한 사항
- ⑥ **(회의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**(자료제출)**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교실 또는 대학에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⑧ **(간사)**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.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,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 위원장 유고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⑨ **(기록보관)**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1.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